



## Imprint

Publisher: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Wiedner Hauptstrasse 63, POB 319, 1045 Vienna, Austria

Layout: WKO Inhouse GmbH | Media  
Wiedner Hauptstrasse 120-124, 1050 Vienna, Austria

Translator: Innhwa Kwon

The German and the English version of the Vienna Rules are the only official texts which were adopted by the Enlarged Presiding Committe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The Korean version at hand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erman version.

# 조정규칙

비엔나조정규칙 | 2016년 1월 1일 시행





# 목차

## 비엔나조정규칙

### 별표 5

제 1 조	총칙.....	2
제 2 조	정의.....	2
제 3 조	절차의 개시.....	2
제 4 조	등록수수료.....	3
제 5 조	조정장소.....	4
제 6 조	절차의 언어.....	4
제 7 조	조정인 선정.....	4
제 8 조	예납과 비용.....	5
제 9 조	절차의 진행.....	6
제 10 조	절차의 병행.....	7
제 11 조	절차의 종료.....	7
제 12 조	비밀유지, 증거능력 및 당사자대리의 제한.....	8
제 13 조	면책.....	9
제 14 조	경과규정.....	9

## 별표 5

### 총칙

#### 제1조

-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조정규칙(이하 “비엔나조정규칙”)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당사자들이 분쟁의 발생 이전 또는 이후 합의하는 경우, 절차 개시 당시 유효한 비엔나 조정규칙이 적용된다.
- (2) 비엔나조정규칙과 달리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조정인 선정 이후 모든 수정사항은 조정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 (3) 위원회는 합의된 수정사항이 비엔나조정규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의

#### 제2조

##### (1) 비엔나조정규칙에서

- 1.1 “절차”란 조정,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다른 대안적 분쟁해결방법, 또는 달리 조정인이 재청하고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이들 분쟁해결방식들의 결합을 말한다.
- 1.2 “조정인”이란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는 1 인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제 3 자를 말한다.
- 1.3 “당사자”란 비엔나조정규칙에 그들의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하거나 합의하였던 1 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을 말한다.

##### (2) 비엔나조정규칙에서 지칭하는 자연인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 절차의 개시

#### 제 3 조

- (1)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라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분쟁을 비엔나조정규칙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절차는 사무국에 그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절차는 당사자들의 의해 추후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일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조정신청서(첨부포함)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당사자, 모든 조정인 및 사무국에 각 1 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부수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조정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1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3.2 사건과 분쟁의 간략한 설명

3.3 분쟁 금액

3.4 지명된 조정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또는 조정인으로 선정될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3.5 비엔나조정규칙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의 상세 사항 또는 제안 사항; 특히

i. 조정인의 수

ii. 절차에 사용될 언어(들)

(4) 사무국장은 조정신청서의 접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가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신청서를 다른 당사자(들)에게 송달하고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물어야 한다.

## 등록수수료

### 제 4 조

(1) 분쟁을 비엔나조정규칙에 부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비엔나규칙 별표 3 에 따른 제경비를 제외한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추후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등록수수료는 납부당사자의 예납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3) 동일한 본안에 관한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 개시 전, 절차 진행중, 또는 절차 이후에 비엔나규칙에 따른 중재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 두번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사무국장은 필요시 등록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 조정장소

### 제5조

조정인은 선행되거나 병행 중인 절차와 무관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정 회의 또는 기일의 장소를 결정한다.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회의 또는 기일을 열 수 있다.

## 절차의 언어

### 제6조

조정인은 사건서류를 송부(제 9 조 제 1 항)받은 후 지체없이 당사자들과 상의하고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절차에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조정인 선정

### 제 7 조

(1) 조정인 또는 조정인의 선정방식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부재 시, 사무국장은 지정한 기한내에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조정인을 지명하고 조정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 사무국은 1 인 혹은 그 이상의 조정인을 추천하여 그 중 1 인 또는 그 이상의 조정인을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조정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조정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인의 자격조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제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3) 위원회의 조정인 선정 또는 지명된 조정인의 확인에 앞서, 조정인은 사무국장에게 그의 (i) 공정성과 독립성, (ii) 수행가능성, (iii) 조정인 취임의 수락, (iv) 비엔나조정규칙의 준수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혹을 야기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와 모순되는 모든 정황을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조정인의 이러한 공개의무는 절차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사무국장은 그러한 진술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조정인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면 위원회가 해당 조정인을 선정하거나 또는 사무국장이 지명된 조정인을 확인한다.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지명된 조정인의 확인여부를 결정한다. 지명된 조정인은 확인받음으로써 선정된다.

(5) 조정인의 확인이 거부되거나 또는 조정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 1 항부터 제 4 항을 준용한다.

## 예납과 비용

### 제 8 조

(1) 사무국장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예상 행정수수료, 조정인 수당에 대한 선금(부가가치세 가산) 및 예상 경비(조정인의 여행 및 체류비, 송달료, 임대료 등)에 대한 1 차 예납금을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조정인에게 사건서류가 송부 되기에 앞선 사무국장이 정한 기한 내에 1 차 예납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사건서류를 송부받은 이후 조정인은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예상소요기간과 비용에 대한 견적을 산정한다. 그에 따라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 2 차 예납금을 결정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첫 조정 기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절차가 예상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조정인은 지체없이 이를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무국장은 이에 상당한 추가 예납금을 정한다.

(4)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납금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일방 당사자가 할당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총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장은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예납금의 미지급액을 부담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내에 예납 분담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사무국장은 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5) 절차의 종료 시, 사무국장은 행정수수료와 조정인수당을 계산하고 경비와 함께 이들 비용을 확정한다.

(6) 행정수수료는 요금표(비엔나규칙 별표 3)에 기초하여 분쟁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행정수수료는 중재절차를 위한 금액의 절반이다. 분쟁금액을 확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청구가 명백하게 잘못 평가되었거나 전혀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사무국장은 당사자들의

산출액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7) 경비는 실제 발생한 지출에 따라 결정된다.

(8) 조정인의 수당은 시간당 혹은 일당 요율에 기초하여 실제 소비된 시간에 따라 산정된다. 요율은 조정인의 선정 또는 확인 시에 조정인과 당사자들과 협의 후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동시에 사무국장은 비용의 적정성과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한다. 당사자들과 조정인 사이 별도의 수당에 관한 협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9) 당사자 간에 달리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법적대리 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10)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개시 직전, 진행중 또는 이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본안과 관련한 중재절차가 비엔나규칙에 따라 개시되면, 진행 중인 절차의 행정수수료는 이후에 개시된 절차의 행정수수료에서 공제한다.

(11)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종료 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본안과 관련한 중재절차가 비엔나규칙에 따라 개시되면, 사무국장은 비엔나규칙 제 44 조 제 10 항에 의거하여 중재인수당을 결정한다.

## 절차의 진행

### 제 9 조

(1) 사무국장은 다음의 경우 조정인에게 사건서류를 송부한다.

- 제 3 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고,
- 조정인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 제 8 조 제 1 항에 따른 1 차 예납금이 전액 납입된 경우.

(2) 조정인은 지체없이 절차진행의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논의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한 수용가능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정인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비엔나 조정규칙에 의한 절차는 대면 혹은 화상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조정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인은 조력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는 조정인과의 모든 회의 또는 기일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임받고 조정의 합의권을 포함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4) 절차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양심적이고, 공정하며, 예의바르게 임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제 1 항 제 1.5 호에 의해 절차가 조기 종료되지 않는 이상, 모든 당사자는 조정인과의 기일에 최소한 1 회 참석하여야 한다.

(5) 조정인과의 기일은 비공개이다. 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조정인,
- 당사자들, 그리고
- 해당 기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정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참석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제 12 조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을 한 제 3 자.

(6)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없이 일방 당사자와 회담을 가질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조정인이 해당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기로 또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조정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부재 중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절차의 병행

### 제 10 조

당사자는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병행하여 진행 중인 것과 상관없이, 동일 분쟁에 관한 어떠한 재판, 중재, 또는 다른 절차를 개시하거나 이미 계류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절차의 종료

### 제 11 조

(1)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는 당사자들에 대한 사무국장의 서면 확인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가 가장 먼저 발생하는 때 종료한다.

1.1 당사자들이 분쟁 전체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경우

1.2 일방 당사자가 해당 절차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서면을 조정인 또는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이는 조정인과 최소 한번의 조정기일이 열렸거나, 조정인의 선정 이후 2 개월 이내에 한번도 기일이 열리지 않았거나, 또는 절차를 위해

협의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 한다.

1.3 조정인이 당사자들 사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고지한 경우

1.4 조정인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서면 고지한 경우

1.5 다음에 관해 사무국장이 서면 고지한 경우

i. 제 7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의거한 조정인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i. 정해진 기한 내에 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동조 제 1 항에 따른 절차의 종료 사유가 분쟁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절차는 부분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

(3) 동조 제 1 항 제 1.2 호에서 제 1.4 호 및 제 2 항의 경우, 조정인은 절차종료의 정황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비밀유지, 증거능력 및 당사자대리의 제한

### 제 12 조

(1) 제 9 조 제 5 항에 열거된 자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그와 무관하게는 알게 되지 않았을 모든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2) 해당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그와 무관하게는 취득하지 않았을 모든 문서는 후속 재판, 중재 또는 다른 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해당 절차 상의 어떠한 진술, 의견, 제안이나 자백 및 일방 당사자의 분쟁 합의의 의사도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상기 내용들과 관련하여 조정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는다.

(3)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의무는 해당 절차의 준거법이 달리 의무조항을 두고 있거나 절차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에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거나,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은 비밀유지 사항이 아니다.

(5) 조정인은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의 본안을 구성하거나 또는 구성했던 분쟁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어떤 재판, 중재, 또는 여타 절차에서 변호사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 대리하거나 자문할 수 없다.

## 면책

### 제 13 조

조정인,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위원회와 위원,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와 그 임직원은 비엔나조정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 경과규정

### 제 14 조

(1) 2016 년 1 월 1 일자로 시행되는 비엔나조정규칙은 2015 년 12 월 31 일 이후에 개시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2) 당사자들이 조정규칙의 시행 이전에 분쟁을 화해규칙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비엔나조정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화해규칙이 적용된다.







**Vienna International Arbitral Centr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VIAC)**  
Wiedner Hauptstrasse 63, 1045 Vienna, Austria

T +43 (0)5 90 900 4398

F +43 (0)5 90 900 216

E [office@viac.eu](mailto:office@viac.eu)

[www.viac.eu](http://www.viac.eu)

---

---